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
		배포일시	2019. 2. 20(수) 총 5매(본문3)	
담당 부서	지역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손덕환, 사무관 엄수연, 주무관 서민지 • ☎ (044) 201-3662, 3669	
보 도 일 시		2019년 2월 2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20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지역 주도 - 정부 지원, 2019년 지역개발사업 3월 공모 21일 사업설명회...투자선도지구 2곳·지역수요맞춤 18곳 등 7월 선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·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20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'을 추진한다.
-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앞서 2월 21일 오전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「2019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설명회」를 개최할 예정이며, 더불어 공모사업에 포함 할 경우 지역공간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「디자인관리 가이드라인」에 대한 설명도 동시 진행한다.
- 공모는 사업 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① 투자선도지구, ② 지역수요 맞춤 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, 지자체에서는 유형별로 우수한 사업을 발굴, 응모할 수 있다.

《 ① 투자선도지구 공모 》

- 투자선도지구는 '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'(이하 지역개발법)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,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70~100억 상당의 국비지원뿐 아니라 세제·부담금 감면 등 규제완화가 종합적으로 지원된다. (☞참고1: 투자선도지구 개요)

- 2015년 시작된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올해 다섯 번째로, 지난 4년간 70여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충남 보령 해양관광 웰니스,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16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.

《 ②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공모 》

-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은 생활환경·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*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, 공모에 선정되면 단일 시·군 사업은 최대 20억 원, 복수의 시·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. (☞참고2: 지역수요맞춤지원 개요)

* 생활환경·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,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·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·고시한 70개 시·군('14년 재지정)

- 이와 함께,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활성화 지역*에 대해서는 공모 시 가점이 부여되며(3점), 고령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(2억원 내)도 별도로 지원된다.

* 성장촉진지역 시군(70개)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% 22개 시·군(시도자율선정)

□ 특히, 올해부터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공모방법이 새롭게 개편된다.

- 기존에는 지역의 자발적 경쟁을 통해 공모사업을 선정하였으나, 올해에는 지자체(道)가 지역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 중 1개에 대해 자체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.
- 지자체가 사업내용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도 단순화하였다. 그간 별도 절차로 진행되던 '투자선도지구'와 '지역수요맞춤지원' 공모일정을 일원화하고, 사업발굴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하기 위해 공모별 세부 유형도 통합하였다.

-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 가점도 받을 수 있다.
-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4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,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(서면→현장→종합)를 거쳐 7월경 최종 20개소 내외* 가 대상지로 선정될 예정이다.
- * 투자선도 2개 내외, 지역수요맞춤 18개 내외
-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“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 면서,
- “지역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도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순회 컨설팅, 지역발전투자협약*,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원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*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·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, '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(균형위 주관, 국토부 지원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엄수연 사무관 또는 서민지 주무관(☎ 044-201-3669, 3670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투자선도지구 개요

□ 투자선도지구의 정의

-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, 인센티브,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구

⇒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, 민간투자를 활성화

※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

-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구

□ 지정대상 및 유형

- (대상) 수도권·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대상

* 예시 : 산업단지, 물류·유통단지, 관광단지, 관광휴양시설, 역세권 등

- (요건) ①교통 등 기반시설, ② 성장 잠재력, ③일정규모 투자·고용 창출, ④인근 파급효과, ⑤지역생활 거점, ⑥민간투자 가능성

*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

- (유형) 낙후지역(성장촉진지역·특수상황지역)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, 거점지역(낙후지역 외 거점지역)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

<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주요혜택 >

유형	발전촉진형	거점육성형
대상지역	낙후지역(성장촉진·특수상황지역)	낙후지역 외 지역
투자·고용	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	1,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
주요혜택	재정지원(도로, 주차장 등 기반시설)	-
	조세감면(법인세, 소득세 등)	-
	규제특례(건폐율·용적률 완화, 특별건축구역, 인허가의제 65개 등)	-
	자금지원(지자체) 인허가 지원 등	-

* 필요시,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·고용규모 기준 완화 가능

참고2

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개요

□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정의

- 기반시설(H/W)과 문화 콘텐츠 등 S/W(타부처 사업 연계가능) 융·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

□ 지정대상 및 유형

- (대상) 성장촉진지역*으로 지정된 70개 시·군

* 생활환경·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,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·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·고시한 시·군('14년 재지정)

- (유형) 성장촉진지역 전체 공모가능 한 '일반형'과 성장촉진지역 중 지역활성화 지역*만 공모가능 한 '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**'으로 구분

* 「지역개발법」에 따라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지정('15.3 지정고시, 22곳에 대해 10년 기간)

** 사업예시 :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공간 정비, 고령자 보행로 정비 등

구 분	일반 사업	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
대상 지자체	·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·군 대상('14년 재지정 기준)	·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22개 시·군 대상
지원 규모	· 최대 약 35억원 (최대 단일 20억, 연계 35억)	· 최대 약 2억원
사업수	· 약 13개 내외	· 약 5개 내외

- (지원) 다양한 사업 지원을 위해 최대 지원규모는 20억원을 원칙으로 하되, 시·군 연계 사업의 경우 최대 15억원 추가 지원

- 다만, 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은 마을회관 정비 등 소규모 시설 정비(총사업비 2억원 이내) 목적이므로 사업 당 최대 2억원 지원

□ (절차) 공모접수 → 사전평가(시·도) → 서면·현장·종합평가*(국토부) → 선정

* 지역개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모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, 종합평가를 거쳐 지원사업 결정